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5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용태 · 고동진
김선교 · 송석준 · 서지영
이만희 · 김재섭 · 서천호
정성국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.

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6조, 제46조 및 제11조의2 · 제46조의2 신설).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,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)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,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하안전관리 관련 법령,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기본계획 수립·시행·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

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.

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⑦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방법,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제3항 중 “대통령령으로”를 “지반침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”로, “사고의”를 “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”로, “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조사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발생한”을 “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”로, “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조사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

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7항) 중 “등에”를 “및 제7항에 따른 결과 공표 등에”로 한다.

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원상복구 의무) ① 지반침하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자비(自費)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제6조(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. <u>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,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</u>
6. (생 략)	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) ① <u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
	② <u>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u>
	1. <u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</u>

2.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,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

3. 지하안전관리 관련 법령,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4. 기본계획 수립·시행·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위원장이 지하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2.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
④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

제46조(사고조사 등) ①·② (생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

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.

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⑦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심의 방법,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(사고조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지반침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-----

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-----
-----조사하여야 한다.

④ -----
-----지반침하로 인하여
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하사고

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
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
다.

⑤ · ⑥ (생략)

<신 설>

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-----
-----조사하여
야 한다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⑧ -----

----- 및 제7항에 따른 결
과 공표 등에 -----

제46조의2(원상복구 의무) ① 지
반침하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
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
그 원인제공자가 자비(自費)로
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

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